영국법의 계수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영국법의 도입 경로

제2차 사법헌장은 단순히 법원을 설립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헌장은 법원에 잉글랜드 법원의 방식에 따라 사법을 행하도록 지시했고, 이로써 해협식민지에 영국법이 계수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법원들은 헌장이 1826년 당시의 잉글랜드법을 현지 사정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해협식민지에 도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1] 1826년 11월 27일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잉글랜드 제정법의 계수 기준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잉글랜드에서 제정된 법률은 명시적으로 확대 적용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계수된 경우에만 싱가포르에 적용되었습니다.

헌장을 통한 계수는 당시 영국 식민지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주민과 상인들은 단번에 완결된 법체계를 얻었습니다.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법에 관한 보통법, 형평법의 원칙, 신탁법, 그리고 잉글랜드 법원의 소송절차법이 그것입니다. 주요 구성원이 영국 출신이고 교역 자금을 런던에서 조달하던 상업 공동체에게 이는 결정적인 이점이었습니다. 상인들과 그 본국 거래처가 잘 아는 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환어음을 발행하고, 채권을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제한: 종교, 관습, 풍속

계수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헌장은 법원이 교회 관할권을 "해당 정착지 주민들의 종교, 풍속, 관습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행사하도록 했습니다.[2] 법원은 이 규정과 유사한 규정들로부터 하나의 원칙을 발전시켰습니다. 영국법을 싱가포르에 적용할 때에는 주민들의 종교, 관행, 풍속을 고려해 그들에게 부정의나 억압이 생기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특히 가족법에서 중요했습니다.[3] 초기의 일부 사건에서는 영국법이 중국, 말레이, 힌두의 관습법에 의해 수정되었고, 일부 토착 관행은 법적 효력을 얻었습니다.[4]

이 제한은 아시아계 상인 공동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혼인, 상속, 가족 신탁의 유효성 문제는 중국, 무슬림, 힌두의 관습을 고려해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중국인 가족과 그 재산에 관해 잉글랜드에는 유례가 없는 판례를 형성했습니다. 조상 제사를 위해 재산을 출연하는 중국인의 관행에 맞추어 변형된 영국 신탁법은 소송이 빈번한 분야가 되었고, 해협식민지에서 중국인 가문의 부가 승계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E편에서 다루는 오늘날 싱가포르의 신탁법과 자산 구조화 실무는 이들 판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 조상 제사 신탁과 계수의 한계

조상 제사를 위해 재산을 출연하는 중국인의 관행은 영국법과 현지 관습 사이의 긴장을 잘 보여 줍니다. 해협식민지의 중국인 유언자는 흔히 주택이나 그 밖의 재산을 영구히 보유하고, 그 수익을 조상 제사에 쓰며, 재산은 결코 매각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영국법상 이러한 신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자선 목적의 신탁은 일반적으로 무효였고, 재산을 무기한 묶어 두는 처분은 영구구속금지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에 반했습니다.

1875년 추밀원이 판결한 *Yeap Cheah Neo v Ong Cheng Neo* 사건에서 이 문제는 대영제국의 최고 법원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추밀원은 잉글랜드의 영구구속금지원칙이 해협식민지에 적용되며, 조상 제사를 위한 신탁은 영국법상 자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처분은 이 원칙에 반하는 범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위에서 무효였습니다.[5] 이 판결은 현지 관습을 고려한 제한의 한계를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영국 가족법을 아시아의 관행에 맞추어 조정할 수는 있었지만, 영국 재산법의 근본 원칙까지 유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속적인 실무상의 결과를 남겼습니다. 중국인 가문들은 이 원칙에 맞추어 재산 관리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존속 기간이 제한된 구조, 회사,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그 밖의 수단을 활용해 가문의 재산을 여러 세대에 걸쳐 보유했습니다. 부를 가문 안에 무기한 유지하려는 바람과 그러한 장치에 한계를 두려는 법의 요구 사이의 긴장은 싱가포르 자산 구조화의 역사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후 민사법(Civil Law Act)은 법정 영구구속기간을 도입했습니다. E편에서 다루는 싱가포르의 현대 신탁법은 위탁자에게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추밀원이 1875년에 다룬 문제, 즉 재산의 유통과 후대의 권리는 오늘날에도 모든 장기 가족 구조를 분석할 때 고려 대상입니다.

상법: 제2의 계수

1826년의 계수에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잉글랜드 상법은 회사, 환어음, 물품매매, 보험에 관한 제정법을 통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이 1826년 이후에 제정되었다면 해협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입법은 제2의 계수를 통해 이 공백을 메웠습니다. 한 민사법 조례는 상사법 문제, 즉 조합, 법인, 은행 및 은행업, 본인과 대리인, 육상 및 해상 운송인, 해상보험, 그리고 상사법 일반에 관해서는 같은 시기 잉글랜드와 동일한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6]

제2의 계수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잉글랜드 상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상사법의 변경이 해협식민지와 이후 싱가포르에 자동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식민지의 상법은 제국의 금융 중심지인 런던의 상법과 보조를 맞추어 움직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상인과 은행은 런던의 거래 상대방과 같은 규칙에 따라 활동했고, 이는 법적 위험과 거래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 규정은 독립 후에도 효력을 유지해 1993년까지 잉글랜드 상법을 공화국에 직접 적용되게 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993년 영국법적용법

영국법의 무제한적 계수는 불확실성을 낳았습니다. 어떤 잉글랜드 제정법이 싱가포르에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잉글랜드 상법의 지속적 계수는 독립국가의 법이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결정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93년 영국법적용법(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 1993)은 이러한 상황을 끝냈습니다.

이 법은 형평법의 원칙과 규칙을 포함한 잉글랜드 보통법이 1993년 11월 12일 직전에 싱가포르법의 일부였던 범위에서 계속 싱가포르법의 일부를 이룬다고 규정합니다.[7] 보통법은 싱가포르와 그 주민의 사정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정이 요구하는 수정을 거쳐 효력을 유지합니다.[8] 잉글랜드 제정법은 제1부칙(First Schedule)에 열거된 경우에만 필요한 수정을 거쳐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법률은 이와 충돌하는 잉글랜드 법률에 우선합니다.[9] 이 법은 상법의 지속적 계수 통로였던 민법 section 5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1993년 11월 12일 전에 개시된 절차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10]

이 법으로 식민지 시대의 계수는 막을 내렸습니다. 1993년 이후 싱가포르법은 독자적인 보통법 체계입니다. 잉글랜드와 영연방의 판례를 설득적 권위로 참고하면서 고유한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매우 높은 설득력을 인정받습니다.[11] 국제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이 조합은 매력적입니다. 익숙한 보통법 체계, 아시아 상업 중심지의 필요에 맞게 형성된 현지 판례, 그리고 잉글랜드, 호주 및 기타 영연방 판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법원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한 오해

싱가포르법이 곧 영국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법은 뿌리가 같으며, 그 때문에 잉글랜드 판례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여전히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1993년 영국법적용법 이후 잉글랜드 제정법은 이 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잉글랜드 보통법도 1993년 11월 12일 당시의 상태로,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만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계약법, 신탁법, 상법의 여러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분야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은 싱가포르법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잉글랜드 판례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

1. 대표적 판례로 *R v Willans* (1858) 3 Ky 16 및 *Yeap Cheah Neo v Ong Cheng Neo* (1875) LR 6 PC 381. 아울러 Kevin Y.L. Tan, "The Second Charter", *Singapore Law Gazette*, 2026년 4월 15일의 논의 참조. ↩
2. Kevin Y.L. Tan, "The Second Charter of Justice and the First Recorder (Part 1)", *Singapore Law Gazette*, 2023년 3월, 헌장 인용. ↩
3. Wikipedia, "Sources of Singapore law"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영국법은 "should be modified in application to Singapore so as not to cause injustice or oppression to the indigenous people", 그리고 "to their religions, usages and manners"를 고려해야 합니다. ↩
4. Wikipedia, "Sources of Singapore law"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in certain early cases English law was modified by Chinese, Malay and Hindu customary law, and some native usages or customs acquired the force of law". ↩
5. *Yeap Cheah Neo v Ong Cheng Neo* (1875) LR 6 PC 381. ↩
6. 이 규정은 1878년 민사법령(Civil Law Ordinance)에서 비롯되어 이후 민법(Cap 43) section 5가 되었습니다. 대상 분야 목록과 "corresponding period" 문구는 2차 문헌, 특히 *Anglo-American Law Review*, vol. 17, 251면에 실린 민법 section 5에 관한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
7. 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 1993, section 3(1), Singapore Statutes Online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
8. 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 1993, section 3(2), Singapore Statutes Online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
9. 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 1993, 제4조 제1항 및 제3항, Singapore Statutes Online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0. Application of English Law Act 1993, section 6, Singapore Statutes Online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
11. Wikipedia, “Sources of Singapore law”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잉글랜드 판례는 “continue to exercise a strong influence on the legal system and are regarded as highly persuasive”.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